

### 3. 학과특임교수 운영세칙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3조(임용원칙) ① 학과특임교수는 <u>정년보장교원을 대상으로 60세 시점에 평가하여 최초 임용하며, 매년 평가를 통하여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POSTECH Fellow</u>의 경우에는 <u>POSTECH Fellow</u> 임용 만료일과 연계하여 학과 특임교수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제 3 조(임용원칙) ① 학과특임교수는 <b>60세 이상의 정년보장 교원을 대상으로 최초 임용할 수 있다.</b></p> <p>② <b>POSTECH University Professor</b>의 경우에는 <b>POSTECH University Professor</b> 임용 만료일과 연계하여 학과 특임교수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문구 명확화, 임용시점, 임용기간, 재임용을 각각 제 3 조, 제 5 조, 제 7 조로 나누어 명시</p> <p>2016-6 회 이사회 반영: 명칭변경 (POSTECH Fellow → POSTECH University Professor)</p>
<p>제5조(임용기간) (삭제: 2015.9.1)</p>	<p>제 5 조(임용기간) <b>학과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교원인사규정 제 5 조에 따른 정년까지 재임용 할 수 있다.</b></p>	<p>임용기간 명확화, 2016-5회 이사회 반영: 임용기간 연장</p>
<p>제7조(임용연장) 최초 임용 후, 평가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 및 연구 능력이 학과 전체 교수의 상위 30%를 유지하는지 여부와, <u>임용기간 연장 시점에서 향후 5년간 대학원생을 지도 및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학과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, 주임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통하여 매년 임용기간을 1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재임용) 최초 임용 후, 평가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 및 연구 능력이 학과 전체 교수의 상위 30%를 유지하는지 여부와, <b>재임용</b> 시점에서 향후 5년간 대학원생을 지도 및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학과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, 주임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통하여 <b>재임용할 수 있다.</b></p>	<p>문구수정(임용연장→ 재임용)</p> <p>임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명시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칙</b></p> <p><b>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5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</b></p>	

	<u>2. (경과조치) 다만 제3조 제2항의 POSTECH Fellow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적용한다.</u>	
--	---	--